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특허법원 판사 이지영

## 목차

- I. 사안의 개요 및 소송 경과
    - 1. 사안의 개요
    - 2. 소송 경과
      - 가. 원심 판결의 요지
      - 나. 상고이유
  - II. 대상판결의 요지
    -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 가. 판결의 요지
      - 나. 별개의견의 요지
      - 다. 판례의 변경/원심에 대한 판단
  - III. 연구
    - 1. 소멸시효제도
      - 가. 의의
      - 나. 제도의 취지
    - 2.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가. 민법의 규정
      - 나. 학설
      - 다. 판례
      - 라. 비교법적 검토
    - 3. 채무승인과 소멸시효
      - 가. 채무승인과 소멸시효 중단
      - 나. 채무승인과 시효완성이익의 포기
      - 다. 추정 법리
      - 라. 비교법적 검토
  - 4. 대상 판결
    - 가. 추정 법리 적용의 변경
    - 나. 별개의견
    - 다.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 5. 판례 변경의 필요성
    - 가. 대상 판결
    - 나. 별개의견의 요지
    - 다.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 라. 별개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 6. 검토
    - 가. 증명책임 전환의 문제
    - 나.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
    - 다. 신의칙 내지 권리남용
    - 라. 소멸시효 제도의 재검토
- IV. 마치며

# I. 사안의 개요 및 소송 경과

##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피고<sup>1)</sup>로부터 아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억 4천만 원을 빌렸다.

	대여일(변제기)	원금	이율	변제기
제1 차용금	2006. 12. 28. (2009. 12. 31.)	30,000,000원	연 20%	2009. 12. 31. 제1근저당권 설정
제2 차용금	2009. 6. 20. (2009. 12. 30.)	90,000,000원	정함이 없음	2009. 12. 30.
제3 차용금	2011. 1. 25. (정함이 없음)	20,000,000원	정함이 없음	정함 없음
제4 차용금	2015. 11. 2. (2016. 11. 1.)	100,000,000원	연 18%	2016. 11. 1.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1. 2. 피고에게 '일금: 1억 원정. 전 미수금 1억 4,000만 원 합계 2억 4,000만 원', '이자'는 연 150만 원(월 150만 원의 오기)으로 하여 매월 30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6. 2. 6. 150만 원, 2016. 3. 19. 150만 원, 2016. 9. 30. 500만 원, 2017. 7. 6. 1,000만 원 등 합계 1,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가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해당 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sup>2)</sup>에 대하여 원고는 제1, 2 차용금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1) 원고와 피고는 모두 상인이다.

2) 546,597,075원 중 461,436,162원을 제1, 2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잉여금 43,984,345원을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이다.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대여원리금을 초과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 2. 소송 경과

### 가. 원심의 요지(인천지방법원 2021나64385 판결)

원금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전 이자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일부가 변제된 경우, 액수의 다툼이 없는 한 원금채무에 관한 묵시적 승인인 한편, 이자채무에 대해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1, 2 차용금 원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제1, 2 차용금 이자채무의 소멸시효는 완성된 상태에서 원고가 제1 내지 4 차용금을 일부 변제함으로써 ‘추정 법리’에 따라 제1, 2 차용금 이자채무에 관하여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도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여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배당이의의 소)을 배척하였다.

#### (1) 각 차용금의 약정 이자율

제1 차용금은 연 20%, 제2, 3 차용금은 상법상 6%의 법정이자율 인정된다.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하면 제4 차용금의 이율은 연 18%이다.

#### (2) 제1, 2차용금의 원금채권 (차용증작성과 채무승인)

제1, 2 차용금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제1 차용금의 변제기(2009. 12. 31.), 제2 차용금의 변제기(2009. 12. 30.)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제1, 2 차용금의 원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시효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한 때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이하 ‘추정 법리’라 한다)되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제1, 2 차용금의 원금을 포함하여 “전미수금 일억 사천만 원 합계 이억 사천만 원”이라고 기재한 것은 제1, 2 차용금의 원금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다.

#### (3) 제1, 2 차용금의 이자채권

제1, 2 차용금에 대한 이자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적용되

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이 사건 차용증 작성으로 원금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이자채무에 관하여 추정 법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제1, 2 차용금 이자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은 포기한 것이다.

(4)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총당되고 남은 구체적인 총당내역을 정리하고(이하 기재 생략) 이에 따라 배당액을 경정하였다.

#### 나. 상고이유<sup>3)</sup>

‘추정 법리’는 위법하므로 제1, 2 차용금 이자채무에 대한 시효이익 포기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 사유가 있다(제2 상고이유).

## II. 대상판결의 요지

###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파기환송)

#### 가. 판결의 요지

추정 법리(대법원 1967. 2. 7. 선고 66다2173 판결 등)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따른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한다.

(1) 추정 법리는 인식의 추정 및 의사표시의 추정은 경험칙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사실상 추정이지만 시효완성에 대한 인식의 추정은 경험칙에 근거한다고 보기 어렵고,<sup>4)</sup>

---

3) 제1 상고이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에 따른 경계 약정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으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글에서는 기재를 생략한다. 아울러 종결된 사건의 제3자 재판기록 열람이 불가하여 상고이유서 확인을 할 수 없었다. 대법원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측한 것이다.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 추정도 경험칙에 근거한다고 보기 어렵다.<sup>5)</sup>

(2)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는 서로 구별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채무승인과 달리 시효이익 포기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추구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하고, 위 효과의사는 시효이익 포기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다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3) 추정 법리는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이라는 행위만을 근거로 하여 채무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손쉽게 추정한다. 이는 권리나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에 대해 엄격하고 신중한 해석을 요구하는 대법원 판례의 일반적인 원칙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4) 추정 법리는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이라는 사정만 있으면 그 사정으로부터 시효완성 사실에 대한 인식과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추정하고, 채무자에게 이러한 추정을 번복할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채무자를 법이 예정하지 않았던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한다. 대부업체나 추심업체 등이 시효완성 후 채무자에게 일부 변제 등 채무승인 행위를 압박하거나 유도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게 하는 데 악용되는 등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도 있어 정책적으로도 부당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

4) 시효완성 여부는 소멸시효기간,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 사유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요소에 대한 판단은 때로 불명확하고 복잡하므로 단지 소멸시효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았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았는지는 개별 사안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 경험칙에 따라 일률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5) 시효이익 포기는 시효완성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런데 채무자가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그 기산일로 소급하여 채무에서 해방되는 법적 이익을 누리게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 이익을 포기하고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보통의 채무자라면 이처럼 자신의 법적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굳이 불리한 법적 지위를 자청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을 하는 채무자의 인식과 의사에 관한 경험칙은 나라마다 크게 달라질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추정 법리는 비교법적으로 볼 때 이례적인 법리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독일이나 미국에는 이러한 추정 법리가 존재하지 않고, 시효이익 포기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살펴봐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프랑스에도 추정 법리는 존재하지 않고, 시효의 묵시적 포기는 시효를 주장하지 않는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는 민법 규정(제2251조 제2항)이 있다. 일본에도 현재 추정 법리는 판례상 채택되어 있지 않다.

## 나. 별개 의견의 요지

원심판결 중 제1, 2 차용금 이자채무에 관한 판단 부분에는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결론에는 동의한다.

(1) 그러나 추정 법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심이 법리를 잘못 해석·적용한 것이므로 추정 법리에 관한 판례 변경은 필요하지 않다. 다수의견이 내세우는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에 관한 구체적 판단기준과 종전 판례의 의사해석 판단기준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추정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타당성을 인정하고 적용해 온 것으로서 여전히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추정 법리의 근거인 경험칙이 처음부터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회일반의 상식에 반하는 것이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추정 법리는 사실상 추정에 불과하므로 반증으로 추정이 반복될 수 있다.

(2) 대법원은 추정 법리를 유지하면서도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를 구별하고 있고,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의사해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해 왔다. 따라서 추정 법리가 채무자를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한다거나 부당한 결과를 야기한다고 보기 어렵다.

## 다. 판례의 변경 및 원심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일부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제1, 2 차용금 이자채무의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그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원심은 원고가 시효완성사실을 알면서도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심리하였어야 한다.

(2) 일부 변제할 당시 해당 이자채무의 시효완성 및 포기의사 존재 여부를, 변제 동기·경위·자발성, 일부 변제액과 소멸시효 완성된 이자채무액의 차이, 시효 도과 정도,

변제 전후의 언동 및 당사자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심리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추정 법리에 따라 이자채무에 관한 시효이익 포기를 인정하였으므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3) 원심 중 제1, 2 차용금 이자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한 부분에는 파기사유가 있다. 그러나 환송 후 원심이 파기 취지에 따라 심리.판단하였을 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원리금 채무 액수와 변제충당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배당금을 새로 산정할 필요가 있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전부 파기한다.

(4) 추정 법리를 인정한 기존의 대법원 판결들을 변경한다.

### Ⅲ. 연구

#### 1. 소멸시효제도

##### 가. 의의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법률관계가 점점 불명확해지는 것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을 법적 보호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등 참조).

##### 나. 제도의 취지

소멸시효 제도의 입법적 근거에 관한 학설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사회질서 유지, 증명 곤란의 구제, 권리행사 태만에 대한 제제이다.<sup>6)</sup> 판례도 같은 취지에서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하게 되는 증거 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내지는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고 밝혔고,<sup>7)</sup>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 있고 특히 소멸시효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sup>8)</sup>라고 하여 권리불행사자에 대한 제재적 측면을 강조하였다.<sup>9)</sup>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설에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sup>10)</sup> 즉, ① 시효제도의 주요 목적은 시효로 인해 직접 의무를 면하거나 권리를 취득하는 자에 대한 보호에 있는 것이지 신뢰보호는 부차적 효과에 불과하고, ② 일정 시간이 흘러서 진정한 권리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사정이나 일정 기간 지속된 사실 상태가 오히려 진정한 권리관계에 부합할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 그 자체만으로 권리를 박탈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③ 권리행사를 태만한 자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것은 증명 곤란의 사유를 뒷받침하는 논거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시효 제도의 본질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 2.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 가. 민법의 규정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권리가 바로 소멸하는지 당사자의 원용이 있어야 소멸하는지 문제된다.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고 아래 표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 효과와 관련한 민법 주문들은 각 권리에 따라 산재되어 있다.

한편 2004년 민법개정안은 시효완성의 효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지에 대하여 논의

6) 민법주해[Ⅲ], 총칙(3) 제7장 소멸시효 전문(윤진수 집필), 박영사, 2004, 387-388면.

7)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8)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105314 판결.

9) 진도왕,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에 관한 시론적 고찰 - 미국 소멸시효법에서의 시사점 -”, 아주 법학 제15권 제4호, 222면.

10) 이하 반대론은 민법주해[Ⅲ], 총칙(3) 제7장 소멸시효 전문(윤진수 집필), 388-389면과 같다.

하였는데, 아래 ‘나. 항’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은 상대적 소멸설의 입장에 따라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권리의 소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는 그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는 규정의 신설의견이 개진되어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개정 대상에서 최종 제외되었다.<sup>11)</sup>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제369조(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제421조(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제495조(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부칙 제8조(시효에 관한 경과규정)**

① 본법 시행 당시에 구법의 규정에 의한 시효기간을 경과한 권리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또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 나. 학설

### (1) 절대적 소멸설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당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민법이 의용민법에서 존재하였던 시효의 원용 규정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점, 다른 조항(민법 제369조, 민법 제766조 제1항, 부칙 제8조 제1항)이 시효로 권리가 소멸한다고 규정한 점, 상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시효원용권자의 범위를 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고 시효원용권을 행사한 자와 시효원용권이 없거나 이를 행사하지 않은 자 사이에서 권리소

11) 위계찬,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개정논의에 대한 평가와 전망”, 인권과정의 Vol.511, 2023. 2., 28면.

멸 여부가 균일하게 처리되지 않아 부당한 점 등을 근거로 한다.<sup>12)</sup>

## (2) 상대적 소멸설

소멸시효의 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시효의 이익을 얻게 될 당사자가 권리의 소멸을 주장한 때에 비로소 권리가 소멸한다고 한다는 견해이다. ① 민법에 원용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로서 발생한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는 권리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상대적 소멸설을 취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 점, ② 다른 조항에서 시효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한다고 규정하였더라도 단순한 용어의 혼용에 불과할 수 있는 점, ③ 민법상 취득시효에 대한 규정이 시효기간의 완성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는 별개의 제도인 점, ④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절대적 소멸설을 따르게 되면 실체법과 소송법 간 효과상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므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시효이익의 포기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또한 원용의 의사를 조건으로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민법의 취지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sup>13)</sup>

## (3) 검토

두 학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원용권’ 유무이다. 즉,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하는 데는 일치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함으로써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지 또는 원용권이 생길 뿐 그 원용권의 행사로 권리가 소멸하는 지에 있어서 견해가 나뉜다.<sup>14)</sup> 어느 쪽이든 시효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필요한,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면서 상대방에 대해 하는 단독행위이다. 따라서 포기행위 자체가 주요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자백이나 직접증거가 없을 경우 간접사실에 경험칙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sup>15)</sup>

12) 김민지, 일본 민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석사논문, 2022, 82면. 재인용; 민법강의 제26판, 법문사, 2020, 405면-408면; 곽윤직·김재형, 앞의 책(주1), 447면-450면; 오영준,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지원림, 민법강의 제13판, 홍문사, 2015, 433-434면.

13) 김민지, 앞의 논문, 83면 재인용; 곽윤직·김재형, 앞의 책, 447면-450면; 지원림, 앞의 책, 433-434면.

14) 여미숙,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변론주의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37권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379-380면.

15) 태기정,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과 관련하여-”, 법학논집 제

#### (4) 관련문제

##### (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알면서 일부 변제한 경우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시효완성으로 채권이 소멸한다. 이때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 변제하였다면 채무 전체에 대한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잔금채무에 대해 시효 이익을 주장할 수 없고, 이미 변제한 금액은 비채변제로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채권은 존재하고 시효원용권만 행사할 수 있을 뿐인데, 채무자가 완성사실을 알면서 일부 변제하였다면 시효원용권의 포기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부 변제는 유효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채무자의 시효원용권의 포기로 인해 변제 의무가 있다.

##### (나)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

절대적 소멸설의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무는 자동적으로 소멸하므로 모르고 한 변제는 비채변제이지만,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로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아니므로 잔대금채무는 절대적 소멸설에 따르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다.

상대적 소멸설의 입장에서는, 시효이익의 원용이 없는 동안 채권은 존재한다. 일부 변제는 유효하고 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원용권의 포기는 아니므로 잔부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면 기각될 것이다.

##### (다) 시효 완성 후 주 채무자의 일부 변제가 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

보증인은 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민법 제433조 제1항), 주 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민법 제433조 제2항). 따라서 보증인은 시효 완성으로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실(절대적 소멸설에 의할

---

29권 제3호, 497면.

경우) 또는 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주 채무자가 시효원용권을 가진다는 사실(상대적 소멸설에 의할 경우)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변제한 경우 주 채무자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보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만일 주 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경우 절대적 소멸설에 따르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변제가 되고 상대적 소멸설에 의할 경우 유효한 변제가 되며, 나머지 부분은 보증인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거나 시효원용권의 행사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다. 판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당사자의 원용 여부에 관계없이 채권은 당연히 소멸한다는 판결<sup>16)</sup>, 변론주의의 원칙상 소송에서 당사자가 시효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고 본 판결<sup>17)</sup> 등 판례는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의 어느 한쪽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판례가 절대적 소멸설에 가깝다는 견해<sup>18)</sup>, 절대적 소멸설을 기본으로 하나 상대적 소멸설에 가깝다는 견해<sup>19)</sup>, 상대적 소멸설이라고 보는 견해<sup>20)</sup> 등 다양한 평가가 있다.

## 라. 비교법적 검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 권리의 실제법상 소멸이라고 보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독일민법 제314조 제1항은 채무자는 급부를 거절할 권리를 갖는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영미법은 소제기 기간의 문제로 취급한다.<sup>21)</sup>

---

16) 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다2445 판결,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910 판결,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누655 판결 등.

17)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863 판결,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5631 판결 등.

18) 여미숙, 앞의 논문의 각주 14 재인용; 곽윤직, 김재형, 민법총칙[민법강의 I] 제9판, 박영사, 2013, 447면; 김용담 편집대표(이연갑 지필부분), 주석 민법 제4판 민법총칙(3),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544면 등

19) 여미숙, 앞의 논문의 각주 15 재인용; 강명선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고찰”, 비교사법 제6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1999, 345면 등

20) 강구욱,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외법논집 제39권 제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73면.

21) 황태윤,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대한 소고 -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아법학, 제86호, 2020, 134면.

### (1) 미국

미국의 소멸시효는 대륙법계와는 달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고, 소멸시효법(statute of limitation)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법률로, 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부정되는 것일 뿐 권리의 소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sup>22)</sup>

### (2) 독일

독일에서는 소멸시효제도의 목적을 권리자로부터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 없다고 추측되는 청구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의무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본다.<sup>23)</sup> 2002년 개정된 독일법 제214조(시효완성의 효력)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는 급부를 거절할 권리를 가지고(1항), 소멸시효가 완성된 청구권의 만족을 위하여 급부된 것은 급부가 시효완성을 알지 못하고 행하여진 경우에도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채무자가 계약에 좇아 행한 채무승인 및 담보 제공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2항)”고 규정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권리자체의 존속을 여전히 인정하되 채무자에게 이행을 거절할 급부거절권이 부여되는바, 영구적 항변권으로 볼 수 있다.<sup>24)</sup>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변제는 유효한 변제로서 채무자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해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행사할 수 있었던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sup>25)</sup>

### (3)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와 관련하여 시효를 실체법적 개념으로 보는 견해는 권리의 소멸로 인식하고, 절차법적 개념으로 보는 견해는 소권의 상실로 파악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효과에 있어서는 양설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에 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변제는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어 그 점에서는 차이가

22) 진도왕, 앞의 논문, 231면.

23) 윤석찬, “독일민법의 소멸시효제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62권 제1호, 2021. 2., 244면.; 이은영, 민법총칙, 2005, 747면 재인용.

24) 윤석찬, 앞의 논문, 243-244면.

25) 윤석찬, 앞의 논문, 244-245면, 개정 독일민법 제215조 참조

없다고 하였다.<sup>26)</sup>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시효완성 후 변제 한 경우 이를 인식하였다면 제1235조 제2항(임의로 이행된 자연채무에 대하여는 반환이 인정되지 않는다.)<sup>27)</sup>에 의하여 유효한 변제가 된다. 만일 시효의 완성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에는 실제 법적인 권리가 소멸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지만, 판례는 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sup>28)</sup> 2008년 개정된 민법에서도 소권이 시효에 걸려 소멸하고(제2224조, 제2227조), 시효는 원용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sup>29)</sup>

#### (4) 일본

일본에서는 시효의 완성만으로는 권리의 변경은 생기지 않고 원용이 있어야만 효과가 발생하고, 시효이익의 포기에 의해 효과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다는 견해가 통설에 가깝다.<sup>30)</sup> 최고재판소 또한 “시효에 의한 채권소멸의 효과는 시효기간의 경과와 함께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효를 원용한 때에 비로소 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여 시효를 원용할 때 비로소 확정적으로 권리가 소멸한다고 판시하였다.<sup>31)</sup>

### 3. 채무승인과 소멸시효

#### 가. 채무승인과 소멸시효 중단<sup>32)</sup>

---

26) 전수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논문, 2020, 재인용, 29면; 김학동, “소멸시효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민사법학 제11·12호, 한국민사법학회, 1995, 70면

27) Article 1235 La répétition n'est pas admise à l'égard des obligations naturelles qui ont été volontairement acquittées.

28) 여미숙, 앞의 논문, 381면

29) 여미숙, 앞의 논문, 381면.

30) 여미숙, 앞의 논문, 383면.

31) 最判 1986.3.17., 民集40卷2号, 420面, 전수이, 앞의 논문, 43면.

32)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다.<sup>33)</sup> 승인에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할 수 있는데,<sup>34)</sup> 묵시적 승인의 예로는 채무증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경우,<sup>35)</sup> 일부변제<sup>36)</sup>, 담보제공<sup>37)</sup>, 면책적 채무인수<sup>38)</sup>, 회생절차 과정에서의 변제기 유예의 합의<sup>39)</sup> 등이 있다. 다만 묵시적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sup>40)</sup>

이와 같은 채무승인은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하나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한다.<sup>41)</sup> 관념의 통지는 당사자가 자신의 내심의 의사나 법률효과의 발생 의욕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일정한 사실이나 관념을 외부로 알리는 사법상의 행위이다. 주주총회 소집통지, 채권양도 통지, 공탁 통지 등과 같이 실제로 무엇인가를 알리는 것으로 준 법률행위로 분류되는데, 이러한 행위가 특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통지를 한 사람이 효과발생을 희망하는지와 상관없이 법률이 효과발생을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 나. 채무승인과 시효완성 이익의 포기

### (1) 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제도를 통해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법적 이익을 누리게 된다. 민법은 이러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이러한

---

33) 진도왕, 앞의 논문, 225면.

34)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217 판결.

35) 대상 판결과 같다.

36) 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등

37)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38)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376 판결.

39)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다208303 판결.

40)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41)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소멸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하지 못하게 한다(민법 제184조 제1항). 따라서 반대 해석상 시효완성 후의 포기는 가능하다.

한편 법률행위에 의하여 소멸시효를 단축 또는 경감하는 것은 허용하면서도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하는 것은 금지한다(제184조 제2항).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정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편, 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의 이름 아래 소멸시효 제도의 목적이 부당하게 좌절되지 않게 하는 조항이다(대법원 2025. 7. 25. 선고 2023다240299 판결).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방에 대한 단독행위로<sup>42)</sup>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묵시적 포기의 의사표시에 대해 대법원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sup>43)</sup>

한편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력만 가지므로 이해관계자는 소멸시효 원용이 가능하다. 다만,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당시에는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가 나중에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sup>44)</sup> 시효이익이 포기된 것으로 본다.<sup>45)</sup>

## (2) 시효이익의 포기로서의 채무승인

채무승인은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바로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는 없다. 즉,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과 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는 개념상 구분된다. 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다. 그러나 시효가 이미 완성된 후에 한 채무승인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려면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서도’ ‘시효의 완성으로 발생한 법률적인 이익

42) 대표저자 박윤직, 앞의 책, 555면(윤진수 집필 부분)

43)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44)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

45) 한승수, “변제충당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의 인정범위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9745 판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6권 제1호, 2022, 73면.

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표시해야만 한다.<sup>46)</sup>

## 다. 추정 법리

### (1) 의의

대법원은 1967. 2. 7. 선고 66다2173 판결에서 최초로 '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하였고, 대상 판결 이전까지 많은 사안에서 추정 법리를 적용해 왔다.<sup>47)</sup>

추정 법리는 의사표시에 대한 엄격한 주장, 증명 대신 시효완성 후 승인한 사실만 확인될 경우, 즉 관념의 통지가 증명되는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표시를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채무 승인행위를 하였음'이 아니라 '시효가 완성된 사실' 및 '채무승인' 증명을 통해 시효이익 포기의 재항변을 할 수 있고,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몰랐고',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가 없었음'을 반증해야 한다.

### (2) 비판

이에 대해, 대법원이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채무승인'과 '시효이익의 포기행위'를 구별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시효완성 후의 승인에 대해 시효이익의 포기의사를 추정하는 대목에서는 양자의 구별이 다소 모호하다거나<sup>48)</sup>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모르고 한 것이 통상적이고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를 승인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추정 법리를 인정하는 판례는 경험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sup>49)</sup> 시효이익의 포기에는 효과의사가 요구되는데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를 쉽게 추정할 수 없다거나<sup>50)</sup> 시효완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변제하였다면 시효이익의 포기가 아닌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로 보면 충분하다고 본다.<sup>51)</sup>

46)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47) 태기정, 앞의 논문, 497면

48) 진도왕, 앞의 논문, 227-278면.

49) 김용담 대표저자, 앞의 책, 608면(이연갑 집필 부분). 대표저자 박윤직, 앞의 책, 554-555면(윤진수 집필 부분) 등 다수

50) 한승수, 앞의 논문, 73면.

### (3) 판례

추정 법리를 적용한 판례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몇몇 사안에서는 추정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의사표시 해석의 원칙에 따라 소멸시효 이익 포기 여부를 판단하기도 하였다. 이를 구분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추정 법리 적용 사안

##### ①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4796 판결

채권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채무자가 **채권양도서에 입회인으로 서명·날인**한 경우, 소멸시효완성 후의 채무승인에 해당하므로 추정 법리에 따라 시효 완성을 알고서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②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그 대금이 배당되어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경매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원심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후 원고의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시효이익의 포기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이를 위법하다고 보아 파기하였다).

##### ③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판결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그 절차에서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

51) 송덕수, 민법총칙 제6판, 박영사, 2021, 559면.

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어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본 사안이다.

#### (나) 추정 법리가 적용되지 않은 사안

##### ①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동일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한 때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채무에 대하여도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이나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으나(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그 채무가 별개로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고, 채무자가 가압류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 받을 목적으로 피보전채권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으로 적시되지 아니한 별개의 채무에 대하여서까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설시하여 특정한 채무 변제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 그 외의 범위에서는 시효이익의 포기를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이다.

##### ②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2031 판결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채무자가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제반사정상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서 그 일부를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채권자가 채무 일부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할 무렵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나아가 그것이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지도 불분명함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여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라고 설시하였다.

##### ③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추정 법리와는 다른 기준으로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이익 포기 여부를 판단하면서도 종전 추정 법리를 명시적으로 폐기하지 않았다.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해 피고는 상계항변을 하였으나(상계항변)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피고가 항소하였고 2심에 이르러 피고는 소멸시효 항변을 하자(소멸시효항변) 원고는 피고의 1심에서의 상계항변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시효이익 포기에 해당한다고 재항변하였다(재항변).

원심은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는 수동채권에 대한 승인으로, 추정 법리에 따라 시효이익 포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와 항소심의 속심적 구조를 고려해 볼 때 피고가 소멸시효항변에 앞서 1심에서 상계항변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다.<sup>52)</sup>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승인과 시효이익 포기를 구별하는 전제에서 채무자가 상계항변을 통하여 채권의 존재를 긍정한 것은 맞고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그를 바탕으로 한 상계는 예비적인 의사표시로서 ‘종국적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평가가 있다.<sup>53)</sup>

---

5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의를 제기한 후 응소하여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판결을 구하였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소송에서의 상계항변은 일반적으로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피고의 금전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한다는 예비적 항변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상계항변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 대여금채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소멸시효항변이 있었던 경우에, 상계항변 당시 채무자인 피고에게 수동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하려는 효과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이 속심적 구조인 점을 고려하면 제1심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상계항변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 항소심에서 소멸시효항변이 이루어진 경우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피고가 원심에서 소멸시효항변을 하기에 앞서 제1심에서 상계항변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피고가 상계항변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원고로 하여금 피고가 더 이상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 내지 신뢰를 가지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계항변을 한 후 소멸시효의 항변을 한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53) 한승수, 앞의 논문, 76면.

④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2464 판결

이전의 대여금과 추가 대여금을 합하여 대여원금 8천만 원, 약정이자 월 1.5%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채무자가 2,500만원을 이자로 지급하였는데, 21개월분 이자가 2,520만 원으로 변제금이 이자 중 일부금에 충당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원금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자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였으므로 채무자가 이자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원금채무에 관한 묵시적 승인이자 이자채무에 관한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라는 추정 법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해당 사안에서는 변제 행위를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사유로서의 묵시적 채무승인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서 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개인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안에서, 원심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의 시효중단 사유인 채무의 승인이므로 추정 법리에 따라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중지시키거나 일정 기간 담보권 실행을 못하게 하는 한편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궁극적으로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를 밟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근저당권부 채권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려는 효과의사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에도 추정 법리로 인정한 원심이 위법하다고 설시하였다.

(다) 평가

추정 법리가 적용되는 소송실무에 대해 학계의 평가는 다양한 편이다.

제1설은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은 관념의 통지이고 시효이익의 포기는 단독행위(법률행위)로 구별되지만, 시효완성 후의 승인행위에 대해 시효이익의 포기의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시효완성 전에는 승인으로 시효완성 후에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다는 견해이다.<sup>54)</sup>

제2설은 채무승인은 단순히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만으로 족한 준 법률행위로 시효이익의 포기행위와 엄격히 구별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이를 혼동하고 있다고 본다.<sup>55)</sup>

제3설은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서 내린 결론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시효완성 후에 단순히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는 정도로는(시효이익의 포기의사를 무리하게 추정하면서까지) 시효이익의 포기를 인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판례가 양자를 혼동하고 있지 않으나,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하여는 시효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족하고, 시효이익의 포기사유로서의 승인을 따로 상정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sup>56)</sup>

제4설은 채무승인이 시효중단사유인지, 시효이익 포기사유인지는 그것이 이루어진 시점(소멸시효의 완성 전후)에 따른 구별일 뿐 그 본질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는 점, 효력 면에서 볼 때 두 경우 모두 시효의 재진행이 발생한다는 점, 두 경우에서 모두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에 대한 인식은 필요하지 않다는 점, 처분행위 여부에 따라 양자를 구분하지만, 소멸시효의 재진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시효이익의 포기는 영구적 소멸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이를 처분행위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서 양자를 본질적으로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sup>57)</sup>

## 라. 비교법적 검토

### (1) 미국

미국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그 승인이 있었던 때부터 새로운 채무와 계약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sup>58)</sup> 따라서 채권자의 소권은 이제 승인

54) 진도왕, 앞의 논문, 227면 재인용; 민법주해[Ⅲ](편집대표 박윤직), 총칙(3) 제7장 소멸시효 전문(윤진수 집필), 박영사, 2004, 556면.

55) 진도왕, 앞의 논문, 227면 재인용; 백경일, “합의안의 제시와 채무의 승인-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299 판결”, 민사법학 제47호, 2009, 265면, 273-74면.

56) 진도왕, 앞의 논문, 228면 재인용; 최윤영,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와 채무승인”, 민사판례연구[41], 민사판례연구회, 박영사, 2019, 162면.

57) 이창현, “채무자의 채무승인이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민사법학 제73호, 2015, 306-309면.

58) 진도왕, 앞의 논문, 각주 100- 102 ; 승인은 그간 진행되었던 시효기간을 유보하고, 승인이 있을 때부터 기존 채무에 대하여 새로운 시효를 진행시킨다. Cal. Jur. 3d., Limitation of Actions §210. 가령, 서면에 의하지 않은 계약에 있어서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2년인데, 이때 소멸시효의 완성 전에 채무자가 서면

에 의해 새롭게 창출된 채무 또는 계약에서 그 청구원인을 찾아야 하고,<sup>59)</sup> 채권자는 채무자의 승인으로써 창출된 새로운 청구원인에 기대어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을 뿐이다.<sup>60)</sup>

미국 소멸시효법에서의 승인은 단순히 기존의 채무를 인식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그 채무의 이행을 약속하는 것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채무변제의 의사가 확인될 때에 한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시효의 재개시를 인정하는바, 이러한 승인을 일종의 계약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sup>61)</sup> 시효완성 후의 승인은 그 승인 자체를 직접적 원인으로 삼아 시효의 중단 또는 재개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이론구성하고 있으나, 전자든 후자든 결국 채무자가 기존 채무에 대한 이행의사를 새롭게 되새긴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존 채무의 유지·존속의 효과를 도출하고 그 위에서 시효의 중단 및 재개시를 발생케 하거나 또는 시효완성으로 인해 더 이상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 없게 된(소권이 소멸된) 채권에 대하여 새로운 청구원인(승인 또는 이행의 약속)을 제공함으로써 역시 소권의 부활 및 시효의 재개시를 인정한다.<sup>62)</sup>

## (2) 일본

일본 최고재판소는 우리나라와 같이 추정 법리를 채택하였다가 판례를 변경하여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에 채무승인을 한 경우에 시효완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알지 못하고 한 것이 통상이므로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가 채무의 승인을 한 사실로부터 위 승인이 시효완성을 알고 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의 승인을 한 이상 시효완성을 알지 못했던 경우에도 시효를 원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sup>63)</sup>

일본최고재판소 1966년 4월 20일(昭和41年4月20日) 선고 昭和37(才)1316<sup>64)</sup>

으로써 승인한 경우, 이는 원래의 채권(서면에 의하지 않은 계약)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권을 갱신시키므로 그 시효기간은 2년이 된다. 만약 서면합의에 의한 승인이 청구원인이되어 소권을 갱신시킨다고 보면, 그 시효기간은 4년이 될 것이다(통상 서면계약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는 4년). 참고로 서면에 의한 계약이란 어떤 계약을 서면을 통해 체결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간의 의무나 책임이 증권과 같은 장치에 문언으로써 표시된 일체의 것을 의미한다. Cal. Jur. 3d., Limitation of Actions §39.

59) 진도왕, 앞의 논문, 240면.

60) 진도왕, 앞의 논문, 240면.

61) 진도왕, 앞의 논문, 243면.

62) 진도왕, 앞의 논문, 243면.

63) 김용담(대표저자), 앞의 책, 669면(이연갑 집필 부분), 제인용 ; 일본최고재판소 소화41(1996). 4. 20. 선고 민집 2-4 702

64) [http://www2.osipp.osaka-u.ac.jp/~nomura/project/inter\\_finance/eng/casesj.html](http://www2.osipp.osaka-u.ac.jp/~nomura/project/inter_finance/eng/casesj.html), 최종접속일 2025. 9. 5.

사건명 : 청구이의(請求異議), 기각

사실관계 : 상인 X(원고·상고인)는 Y(피고·피상고인)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X는 Y에게 원금만으로 감액해 주면 분할 상환하겠다고 제안하였다. Y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X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X는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 : Y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반증이 없는 한 시효 완성을 알면서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원금 및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른 연 10%를 초과하지 않는 이자 부분에 대해 Y의 강제집행을 인정하였다.

상고이유 : 상인인 X가 채무를 인정했다는 사실만으로 X가 본 건 채무에 대해 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추정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판시사항 : 채무자가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그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시효완료 사실을 알고 있는 채무자는 매우 예외적이고, 시효완료 사실을 모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상인 채무자의 경우에도 단순히 채무를 승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시효완료 사실을 인정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종전 판례(대법원 소법정 1960. 6. 23., 민집 14권 8호 1498쪽)는 변경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소멸시효의 이익을 다시 주장하지 못한다. 이는 시효 완성 후의 채무 승인과 소멸시효의 항변을 조합하는 것은 모순되며, 상대방 또한 더 이상 소멸시효 항변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부합하며, 시효 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에서 X는 이 사건에서 채무를 시효 완성 후 승인했으므로 더 이상 시효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 4. 대상 판결의 요지

##### 가. 추정 법리의 파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에서 시효이익 포기 의사를 추정해 온 법리가 위법하다고 보고, 종래 추정 법리를 적용해 온 대법원 판결들을 변경하였다.

### (1) 경험칙 위배

- ① ‘시효완성에 관한 채무자의 인식’ 및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채무자의 의사표시’를 추정하는 것은 경험칙에 근거한 사실상 추정이지만, 경험칙으로 뒷받침되지 않거나 오히려 경험칙에 어긋난다.
- ② 시효완성에 대한 인식의 추정은 경험칙에 근거한다고 보기 어렵다. 시효완성 여부는 개별 사안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이고,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 추정도, 시효완성을 알면서도 그 이익을 포기하고 채무를 부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경험칙에 근거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③ 채무자의 인식과 의사에 관한 경험칙은 나라마다 크게 달라질 것이 아닌바, 독일, 미국, 프랑스,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추정 법리는 이례적이다.

### (2)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의 구별

- ①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은 관념의 통지이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효과의사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추구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요구된다. 따라서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 행위만으로는 시효이익 포기 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
- ② 추정이라는 간편한 법적 수단에 기대어 세밀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효과의사에 대한 탐구 과정을 일단 생략하도록 허용한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 (3) 권리포기 의사의 엄격한 해석

권리나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에 대해 엄격하고 신중한 해석을 요구하는 대법원 판례의 일반적인 원칙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 (4) 채무자의 법적 이익의 부당한 침해 방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채무자의 법적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추정 법리는 채무자를 본래 법이 예정하지 않았던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하고, 악용될 수 있다.

## 나. 별개의견 - 대법관 노태악, 오석준, 엄상필, 이숙연, 마용주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하나, ‘추정 법리’ 폐기로 판례를 변경하는 다수의견에 찬성

하지 않는다.

### (1) 법리적 측면

- ① 추정 법리의 근거인 ‘채권은 시효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사실을 일반적으로 안다.’는 경험칙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회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볼 실증적 근거가 없다.
- ② 추정 법리는 ‘사실상 추정’에 불과해 반증으로 번복 가능하며, 대법원도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sup>65)</sup> 추정 법리 적용 시 효과의사 탐구가 부족하거나 의사표시 해석이 부실한 경우가 문제일 뿐, 법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 ③ 시효이익 포기는 일반적인 권리 포기와는 다르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일 때 권리를 가진 자는 채권자이며 채무자는 시효 항변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 (2) 정책적 측면

- ① 추정 법리가 없다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도 그 이익을 포기할 의사로 채무승인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러한 내심의 의사를 증명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 ② 대법원은 추정 법리를 유지하면서도,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의사해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해 왔다.
- ③ 다수의견은 추정 법리가 대부업체나 추심업체 등이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지만, 그러한 사정은 추정 번복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다.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 대법관 권영준

### (1) 경험칙<sup>66)</sup>에 관하여

- ① 별개의견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함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는 경험칙은 시효제

65) “대법원 2011다21556 판결에 따르면, 소멸시효 중단사유 채무승인은 효과의사가 요구되지 않지만, 시효이익 포기는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시효완성 후 채무가 인정됐다 하더라도 곧바로 시효이익 포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법리는 2014다32458, 2020다46663 판결 등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66) 경험칙은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의 성상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사실 판단의 법칙으로, 일반적 상식에 근거한 경우와 전문적 영역에 특화된 경우로 나뉘는데, 이 사건은 일반 상식에 근거한 경험칙이다.

도의 일반적 이해에 관한 것일 뿐 특정 채권의 시효완성 사실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시효이익 포기까지 추정할 근거는 아니다.

② 추정 법리는 경험칙이 부재한 상태에서 의사표시 해석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정형화하는 문제가 있다.

## (2) 추정 번복에 관하여

① 추정 법리가 끼치는 영향이 크고 2013년 판결도 추정 법리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 내심의 의사 같은 증명 난이도가 높은 경우 그 영향이 크고, 증명 부담을 채무자에게 넘기는 것은 증명책임 배분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추정 법리는 번복 가능하지만 실제로 법원이 번복을 인정하는 사례는 드물어서 채무승인이 인정되면 곧바로 시효이익 포기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진다. 현재의 추정 법리는 채무자에게 불리하며, 일부 변제한 선량한 채무자에게 더 가혹하다.

## (3) 엄격하고 신중한 해석에 관하여

별개의견은 ‘상대적 소멸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나 판례가 위 입장임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권리포기에 대해 엄격하고 신중한 해석의 원칙이 권리나 이익 포기의 본질을 가지는 시효이익 포기에도 적용되고, 시효이익이 항변권으로 주장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 (4) 채권자와 채무자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에 관하여

시효완성 전에는 채권자가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채무를 부담하는 명확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채권자의 시간’으로, 채무승인은 권리 불행사 상태를 깨트리는 행위이므로 채무자 보호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효완성 후에는 채무자가 더 이상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거나, 시효원용권을 획득하는 새로운 강력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 ‘채무자의 시간’으로, 시효이익의 박탈은 채무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시효완성 이후의 판단은 채무자 권리 보장의 측면에서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5. 판례 변경의 필요성

## 가. 대상 판결

추정 법리를 인정한 기존의 대법원 판결들을 변경한다.

## 나. 별개의견의 요지

오랜 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축적된 대법원 판례의 견해를 바꾸기 위해서는 ① 그 견해가 애당초 잘못된 것임이 명백하거나 ②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정의 관념에 크게 어긋나게 되는 등 이를 바꾸는 것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비하여 훨씬 우월한 가치를 가짐으로써 그로 인한 법적 안정성의 희생이 정당화될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새로운 법적 견해가 조금 더 낫다거나 더욱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축적된 판례의 견해를 바꾸는 것은 온당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③ 판례의 변경은 결론이 달라지는 사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유 구성을 달리하기 위한 변경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수의견은 추정 법리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만, 이 사건은 추정 법리를 잘못 해석, 적용한 것이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므로 판례 변경은 필요하지 않다.

## 다.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 (1) 일반론

- ① 별개의견은 판례 변경의 기준을 과도하게 높여 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 ② 판례가 부당하면 원칙적으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부당함'은 기존 판례의 타당성이 명백하게 부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판례 변경으로 인한 사회적, 법적 비용이 편익보다 크다면, 부당한 판례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 ③ 판례 변경의 편익은 법적 타당성에 있고, 잘못된 판례를 바로잡음으로써 법리가 현실에 제대로 작동하고 정의를 실현하며, 법체계 왜곡과 부정적 정책 파급효과를 막아 사법 불신 해소와 법의 실효성 회복에 기여한다.

### (2) 추정 법리에 관한 판례 변경의 필요성

- ① 추정 법리는 채권자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결정하는 신뢰의 기반이 되지 않으므로 추정 법리를 폐기하더라도 신뢰 침해 또는 이를 통한 법적 안정성의 저해는 문제

되기 어렵다. 판례 변경의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② 반면 시효이익 포기 법리에 관한 채권자 편향성을 바로잡고 의사표시의 중립적 해석을 강조하는 것, 시효완성 국면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본래 법이 예정한 대로 복원하는 것, 획일적 추정이 아닌 개별적 고찰을 기본적 접근 틀로 확정함으로써 의사 존중과 사적 자치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 이번 판례 변경의 방향성이다.

## 라. 별개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 노태악 대법관

### (1) 판례 변경의 의미와 필요성에 관하여

판례의 규범적 성격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를 구현하려면 판례 변경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특정 쟁점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동안 일정한 방향으로 판례가 확립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변경이 유지에 비해 훨씬 우월한 가치를 가지며 법적 안정성의 희생이 정당화될 정도의 명백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 (2) 추정 법리에 관한 판례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

① 추정 법리가 처음부터 경험칙 또는 상식에 반하는 잘못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판례 법리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었고 오랜 기간 일관된 방향으로 확립된 경우<sup>67)</sup> 시대와 상황의 변화를 들어 판례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② 추정 번복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는 지적은, 추정 법리와 의사해석을 통한 반증의 법리가 조화롭게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현실적 문제이지 추정 법리 자체의 문제가 아니므로 보충의견이 우려하는 문제는 판례 변경 없이도 해결될 수 있다.

③ 다수 보충의견은 추정 법리를 폐기해도 신뢰 침해나 법적 안정성 저해 문제 등 판례 변경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추정 법리 판례의 변경으로 인해 침해가 문제되는 신뢰는 채권자의 특정한 행위 시점의 신뢰가 아니라 소멸시효 및 시효이익 포기를 둘러싼 법제도 전반에 관한 신뢰이다.

④ 다수 보충의견은 판례 변경의 편익이 있다고 하지만, 별개의견은 판례의 변경이 무익하다거나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확립된 판례 법리의 변경은 신중하자는 것이다.

⑤ 다수 보충의견이 추정 법리에 관한 판례를 변경하고 시효이익 포기 여부를 개별적

67) 위약벌 약정에 대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 유추 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는 판례의 변경이 문제된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판례가 타당하고 그 법리에 따라 거래계의 현실이 정착되었으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으로 고찰해야 한다면서 내세운 판단 요소들은, 대법원이 추정 법리를 유지하면서 함께 발전시켜 온 의사해석 법리의 판단 요소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 6. 검토

### 가. 다수의견에 대한 검토

(1) 다수의견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전제 하에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정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의 이름으로 소멸시효 제도의 목적이 부당하게 좌절되지 않도록 민법 제184조 제1, 2항 등을 두고 있다.’고 한다(판결문 7면 하단).

그런데 위와 같은 논리라면 소멸시효 완성 후에는 채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하거나 채무자에게 시효이익을 원용할 권리가 발생하는 점에서 채권자의 지위가 채무자에 우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시효 완성 이후 채권자의 지위 변화와 그 보호 필요성을 고려할 때 채권자의 남용을 방지하고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추정 법리의 파기는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다수 보충의견은, ‘채무승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알고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확일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문제로서 추정 법리 폐기의 중요한 이유가 된다.’거나 ‘추정 법리는 번복 가능하지만 실제로 법원이 번복을 인정하는 사례는 드물어서 채무승인이 인정되면 곧바로 시효이익 포기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는 추정 법리 적용 실태의 문제인 것이지 추정 법리 자체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고, 오랜 기간 소송 실무에서 적용되어 온 법리 변경으로 인한 법적 안정성의 문제를 고려해 본다면 폐기의 중요한 이유로 삼기는 어렵다.

(3) 다수의견과 보충의견(판결문 5, 24면)은 우리나라의 추정 법리가 비교법적으로 이례적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법제도는 각 국가들의 사정에 따라 정립되는 것이 당연하고, 소멸시효 제도만 보더라도 독일, 프랑스가 우리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긴 채권 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있고, 미국은 소멸시효를 제소기간으로 보는 등 개념과 적용, 제도

의 구체적 내용 등이 다르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위 국가들에서 추정 법리를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정 법리 자체의 문제로 볼 근거 중 하나로 삼을 수는 없다.

## 나. 증명의 어려움 - 채권자가 채무자의 내심의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가?

사실상 추정은 경험칙을 적용하여 어떤 사실로부터 다른 사실을 추인하는 작용이다. 사실상 추정이 이루어진다고 증명책임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추정은 일정한 간접사실만 증명해도 일단 요증사실의 증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취급한다. 그 결과 요증사실의 증명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상대방은 추정 반복의 부담을 지게 된다.<sup>68)</sup>

그런데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에 대해 추정 법리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이상, 채권자는 ‘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간접사실이 아닌,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서’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향후 소송실무에서는 채권자가 의사표시 해석 기준에 따라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라는 내심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지가 문제될 것이다.

상대방의 내심의 인식과 효과의사를 증명한다는 것은 결국 간접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식과 효과의사를 추측하는 방식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러나 드러나는 행위에 내재된 의사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들조차도 채무자의 영역에 있다면 과연 채권자가 소송 절차에서 효과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증명의 어려움은 대상 판결이 제시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더욱 쉽게 이해된다.

대상 판결은 “일부 변제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및 자발성, 일부 변제액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액 사이의 차이, 일부 변제 당시 시효기간을 도과한 정도, 일부 변제 당시 및 전후의 언동, 당사자들의 관계와 거래지식 및 경험 등 개별 사안에 존재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일부변제로 인한 채무승인의 사안에서, ‘일부 변제액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액 사이의 차이’, ‘일부 변제 당시 시효기간을 도과한 정도’, ‘변제 당

---

68) 대상판결 26면.

시 및 전후의 언동과 당사자들의 관계'는 채권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비교적 수월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한다. 그러나 동기와 경위, 자발성, 변제 당시 정황, 거래지식 및 경험 등은 온전히 채무자 내심의 영역 문제이자 개인적인 요소들이다. 따라서 채권자가 이와 관련된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다.

대상 판결은 형식적으로는 '추정 법리-채무자의 반증'의 구조를 변경한 것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내심의 의사표시 증명의 어려움을 고려해 본다면 사실상 소멸시효 포기의 재항변을 매우 어렵게 만든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변경이 소위 악덕 추심업자로 대변되는 '나쁜 채권자-선량한 채무자의 구도'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지만, 대부/추심업자가 관련된 채권-채무 관계를 거래 일반으로 볼 수는 없다.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권리자는 보호되어야 한다. 일부 사채업자들의 불법 채권 추심 문제가 시효이익의 포기 및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불법 추심이 문제된 채권/채무 관계가 전체 채권/채무 관계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선량한 채무자 못지않게 많은 것이 선량한 채권자다. 이들의 권리관계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는 법원에게 의사표시의 해석과 증명의 정도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줄 것이다.

#### 다. 의사표시 해석 원리 적용 - 판례 변경의 실익은 무엇인가?

대상 판결은 일부 변제로 인한 채무 승인과 시효이익 포기가 문제된 사안에서 아래 왼쪽과 같은 판단 기준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한편 대상 판결 이전도 '추정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의사표시 해석의 원칙에 따라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의사' 여부를 판단한 예외적인 사례들은 꽤 있었다. 오른쪽은 추정 법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시효이익의 포기 의사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하였던 기준이다.

둘을 비교해보면, '행위의 동기나 경위, 목적 등을 두루 살피되, 상식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로 귀결된다. 결국 대상 판결 전후 판단기준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원이 대상 판결 전에도 '추정 법리'만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에 따라 '추정 법리'와 '의사표시 해석의 원칙' 중 하나를 적절히 선택하여 시효이익 포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추정 법리가 변경됨에 따라 예외 없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효과의사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거친 비유를 들자면, 두 가지 기술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장인이 하나의 기술을 다소 서툴게 또는 신중하지 않게 사용한다고 하여 그로부터 하나의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제도를 변경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대상 판결 다수의견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일부 변제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b>동기와 경위 및 자발성</b> , 일부 변제액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액 사이의 차이, 일부 변제 당시 시효기간을 도과한 정도, 일부 변제 당시 및 전후의 언동, 당사자들의 관계와 거래지식 및 경험 등 <b>개별 사안에 존재하는 여러 사정</b>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b> 판단하여야 한다.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b>동기 및 경위</b> ,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b>목적과 진정한 의도</b>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b>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b> 에 맞도록 <b>논리와 경험의 법칙</b> , 그리고 <b>사회일반의 상식</b> 에 따라 <b>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b> 이루어져야 한다.

## 라. 신의칙 내지 권리남용 법리의 적용 가능성

### (1) 신의칙 내지 권리남용

추정 법리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따라 그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추정 법리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서 소멸시효의 완성을 부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신의칙을 적용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sup>69)</sup>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 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경우, ②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③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한 경우, ④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69) 한승수, 앞의 논문, 79면.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다.<sup>70)</sup>  
이 중 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과 소멸시효 항변에 해당하는 유형은 ③이다.

## (2) 소멸시효 항변과 신의칙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72599 판결 등에서는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제한하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별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의칙을 적용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sup>71)</sup>

## (3) 외국의 경우

① 일본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최고재판소가 추정 법리를 적용한 선례를 파기하면서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소멸시효 항변이라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추정 법리를 적용한 원심과 결론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신의칙 재항변을 인정한 위 재판례에 대해 많은 일본의 학자들은 ‘거래관계의 빠른 결제와 안정된 사실상태의 유지를 위해 법으로 정해진 시효제도의 토대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획일적으로 법적인 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이 시효제도의 취지임에도, 시효완성의 효력 발생 여부를 신의칙과 권리남용이라는 애매한 기준을 사용하여 판단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결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크게 저하시킨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였다.<sup>72)</sup>

70) 이범균,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관례 해설 제4호, 법원도서관 (2006), 22면 이하

71) 한승수, 앞의 논문, 79면.

② 독일도 단기소멸시효가 문제되는 사안 위주로 매우 제한적으로 논의되고 있고,<sup>73)</sup> 채무자가 채권자로 하여금 소멸시효기간을 도과하게 한 경우에 한하여 권리남용을 인정하고 그 효과로서 권리행사가 가능해진 때로부터 불과 수주의 기간 내에 소제기 등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sup>74)</sup>

③ 미국은 소멸시효를 제소기간으로 보고 있고, 금반언(equitable estoppel)의 법리로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원고의 소제기를 지연하게 만든 “적극적 인유도(affirmative inducement)”가 있어야 한다고 볼 뿐이다.<sup>75)</sup>

#### (4) 검토

대법원은 권리남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sup>76)</sup> 이는 소멸시효 항변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특별한 사정 등을 증명하는 것이 ‘채무자의 내심의 의사표시’를 증명하는 것 못지 않게 어렵다는 점은 소송실무에서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권리남용을 인정한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 신의칙 내지 권리남용은 주로 국가배상소송에서 채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행사하는 경우들에 인정되고,<sup>77)</sup> 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에서 신의칙과 권리남용 법리에 근거하여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손쉽게 배척하는 법원의 태도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까지 있다.<sup>78)</sup>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신의성실 내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대부분 사인간 금전거래와 관련한 채권자 보호의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 라. 소멸시효 제도의 재정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불과 10년이고, 상사채권은 5년, 그 밖에 많은 종류의 채권

72) 최창호 외, 과거사 사건에 있어 법원의 소멸시효 남용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조 2013. 11(686권), 72면.  
재인용: 內池慶四郎, “判例批評”, 判例評論(217號), 最高裁事務總局編, 131면; 中川善之助·遠藤浩編, 「基本法コンメンタル」(第3版), 日本評論社(1987), 166면 이하; 五十嵐清, “判例批評”, 判例評論(95號), 最高裁事務總局編, 111면; 山崎敏彦, 判例タイムズ(514号), 151면.

73) 최창호 외, 앞의 논문, 62면 재인용; Säcker, Grothe, Münchener Kommentar, Band I, 4 Aufl. 2001.

74) 윤진수, “소멸시효 남용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55면.

75) 최창호, 앞의 논문, 76면.

76)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77) 최창호 외, 앞의 논문, 52면.

78) 최창호 외, 앞의 논문, 88면.

들이 3년과 1년의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대상이다. 그런데, 이러한 소멸시효 규정들은 경제기반이 미성숙하고, 평균수명이 극히 짧은 시절에 만들어진 것들로, 현실과 동떨어진 짧은 기간으로 인해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충분한 기회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평균수명이 늘고,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사진이나 영상을 찍거나 대화를 녹음할 수 있고 극소형 저장장치를 이용해 증거를 사실상 영구 보관하는 것도 간단해진 이상 증거보전의 곤란은 이제는 소멸시효제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sup>79)</sup> 추정 법리의 변경으로 인해 채권자의 시효이익 포기의 재항변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증거보전의 곤란이 어느 정도 해소된 상황이라면 권리보호의 관점으로 돌아가 민법의 소멸시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소멸시효기간의 확대, 단기 소멸시효 제도의 정비 등을 중심으로 논의함이 타당하다.

#### IV. 마치며

대상 판결은 지난 60년간 적용되어 온 종전 법리를 변경한 데 큰 의미가 있다.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 등 채무승인을 하더라도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알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으로 불행위를 하였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내심의 의사 즉,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가 있었음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익은 법률이 부여하는 권리이므로 이를 포기하는 것은 채무자의 명확한 의사표시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이다.

소송실무에서는 채무자의 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 행위를 시효완성을 알고 한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 경제적으로는 일률적 추정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서 사실관계 확정을 통한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게 됨으로써 불법 추심 등과 관련하여 고통 받는 채무자들을 강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시효이익 포기의 재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예외 없이 채무자의 인식과 내심의 효과의사에 해당하는 ‘시효완성사실을 알았다는 점’과 ‘알면

---

79) 황태윤, 앞의 논문, 137면.

서도 시효이익을 포기할 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인식과 효과의사를 직접 증명할 수는 없어 결국 간접사실들에 거래계의 경험칙을 종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효이익 포기의 재항변이 받아들여지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민법이 규정하는 의사표시 해석의 원칙에 부합할 뿐 아니라 선량한 사회적 약자인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에 앞서 계약의 준수에 따른 채무의 변제 역시 민법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가치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우리 법제는 상대적으로 짧은 소멸시효 기간을 두고 있고, 디지털 기기 등의 발달로 인해 이전과 같은 변제 여부나 채권의 소멸에 대한 증명 부담을 인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효 완성 후 채무변제 등이 이루어지더라도, 시효이익 포기로 일률적으로 추정하지 않는 한 채무자는 변제에 앞서 그 의미와 법률적 효과를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고, 채권자 역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신중을 기할 수 있다.

민법은 예외적인 상황을 특별하게 규율하는 특별법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권리자의 권리를 법률로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는 일반사법이므로, 소멸시효제도의 제한적용을 통해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sup>80)</sup>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80) 황태윤, 앞의 논문, 138면.

## 참고문헌

- 강구욱,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외법논집 제39권 제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 곽윤직, 김재형, 민법총칙[민법강의 I] 제9판, 박영사, 2013
- 김민지, 일본 민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석사논문, 2022
- 김용담 편집대표(이연갑 집필부분), 주석 민법 제4판 민법총칙(3),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 여미숙,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변론주의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37권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 대표저자 곽윤직, 민법주해[Ⅲ], 총칙(3) 제7장 소멸시효 전문(윤진수 집필 부분), 박영사, 2004.
- 송덕수, 민법총칙 제6판, 박영사, 2021
- 윤진수, “소멸시효 남용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 이범균,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판례 해설 제4호, 법원도서관 (2006)
- 이창현, “채무자의 채무승인이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민사법학 제73호, 2015
- 위계찬,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개성논의에 대한 평가와 전망”, 인권과정의 Vol.511, 2023. 2.
- 전수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논문, 2020
- 진도왕,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에 관한 시론적 고찰 - 미국 소멸시효법에서의 시사점 -”, 아주법학 제15권 제4호.
- 태기정,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과 관련하여-”, 법학논집 제29권 제3호
- 최창호 외, 과거사 사건에 있어 법원의 소멸시효 남용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조 2013. 11(686권)
- 한승수, “변제충당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의 인정범위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9745 판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6권 제1호, 2022.
- 황태운,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대한 소고 -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아법학, 제86호, 2020